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융자한도액은 농가당 5천만원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 단서중 “5%”를 “1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거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현행과 같음)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u>융자한도액은</u> <u>농가당 5천만원이하로</u> <u>하며, 대출기간은 금융</u> <u>기관과의 협약에</u> <u>의한다.</u>
제5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u>2년</u> 이내로 한다.	제5조(보조기간)----- ----- ----- <u>3년</u> ----	제 5조 (보 조 기 간)(개정안 과 같음)
제6조 (보조금 지급방법) <생략>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현행과 같음)	제6조 (보조금 지급방법)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지급한도 및 보조비율결정)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구미시, 금융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한다. 단,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u>5%</u> 이내로 한다	제7조(보조금지급한도 및 보조비율결정) ----- ----- ----- ----- ----- <u>10퍼센트</u> -----	제7조(보조금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 (개정안과 같음)